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제외 대상을 추가하고, 소위원회 구성·운영근거를 마련하며, 산재장해인의 직업훈련 신청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산재장해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외국인 근로자 보험급여 일시금 산정을 위한 신체감정을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급여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역학조사 및 특별진찰 결과 추가(안 제7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법적심의 기간 준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사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안 제55조제1항)

산재장해인의 직업훈련 신청기한을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에서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으로 늘려 산재장해인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

라. 신체감정 의료기관에 공단 소속병원 추가(안 제62조제2항)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급여 일시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신체감정을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급여 지급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마. 조문정비(별표5)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규정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같은조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행령 제117조 제1항 3호 규정에 따른 특별진료기관의 진찰결과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소견의 질병

5. 제22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판단의 질병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소위원회 구성·운영) ① 판정위원회는 심의안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질병명 확인 등 공단이 정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판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결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판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제43조제1항제2호”를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별표5 제2호 가목 1)의 가) 중 “별표2 제4호나목”을 “별표3 제7호차목”으로 하고, 제5호 가목 5) 중 “뚜렷한 장애”를 “장애”로 하며, 같은 호 아목 1)을 삭제하고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척추의 골절로 척추에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훈련 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장애등급 또는 진폐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한다.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4. 시행령 제117조 제1항 3호 규정에 따른 특별진료기관의 진찰결과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소견의 질병</u>
	<u>5. 제22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판단의 질병</u>
4. (생략)	<u>6. (현행 제4호와 같음)</u>
<u><신설></u>	<u>제9조의2(소위원회 구성·운영)</u>
	<u>① 판정위원회는 심의안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질병명 확인 등 공단이 정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u>
	<u>②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③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u>

	<u>의·의결한 것은 판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u> <u>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결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판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u> <u>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한다.</u>
제55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①	제55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① -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을 받으려면 제46조제10항에 따라 장해등급 또는 법 제91조의8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u>1년</u>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 ----- ----- ----- <u>3년</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2조(보험급여 일시지급의 신청 및 지급 절차) ① (생략)	제62조(보험급여 일시지급의 신청 및 지급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한꺼번에 지급할 보험급여 금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법 <u>제43조제1항제2호</u>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사	② ----- ----- ----- ----- <u>제43조제1항제1호</u> <u>또는 제2호</u>----- -----

항에 관한 신체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체감정에 드는 비용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 (생 략)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붙임] 시행규칙 별표5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2. 귀의장애 가. 청력의 장애 1)청력의 측정 가) 난청의 장애정도 평가는 영 별표 2 제4호나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dB)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 나) (생략) 다) (생략) 3.~4.(생략)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가.중추신경계(뇌)의 장애 1)~4) (생략) 5) 영 별표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u>뚜렷한 장애</u>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 나.~사.(생략)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2. 귀의장애 가. 청력의 장애 1)청력의 측정 가) 난청의 장애정도 평가는 영 별표 3 제7호차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dB)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 나) (생략) 다) (생략) 3.~4.(생략)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가.중추신경계(뇌)의 장애 1)~4) (생략) 5) 영 별표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u>장애</u>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

아. 준용등급 결정 1) <u>척추의 골절로 척주에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u> 2) (생략) <u>자. (신설)</u>	나.~사.(생략) 아. 준용등급 결정 1) (삭제) 2) (생략) 자. <u>척추의 골절로 척주에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한다.</u>
---	---